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신용거래**는 고객님의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를 당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융자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상승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당사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대금)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등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 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매수증권(담보) 가치가 담보유지비를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 ※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를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상당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 ↳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 **일부 증권(예 : 증거금을 100%인 증권)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H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Q2.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 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Q3.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i)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 납부요구에 대한 미납일 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 Q4.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은 60일 **[1]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연장 불가 전체 상환기간은 60일로 제한**됩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를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투자원금 50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500만원으로 시가 1만원 A주식 1천주 매입 하였으나, 추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170% 가정)을 하회하여 임의처분이 실행될 경우

※ **반대매매 절차**

(D일) 담보유지비를 하회사실 발생 및 추가담보납부 요구, 추가담보 납입기 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 (D+1) 반대매매 실행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신용거래 매수	10,000원	10,000,000원	200%	-
D일	8,300원	8,300,000원	166%	담보유지비를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추가담보 미납 (20만원 담보부족)
D+1일	반대매매 실행 * 반대매매 수량 = $\frac{8,300,000 - (5,000,000 \times 1.7)}{8,300 - (5,810 \times 1.7)} = 127$ ↳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④ 담보의 청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중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 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평가비율 = 계좌평가금액/융자금

- ↳ **(반대매매가를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정한 경우)** 전일종가(8,300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하한가, 5,8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27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127주)이 7,000원에 체결 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약 89만원(127주*7,0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20만원)의 4.4배 수준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유화증권 상담센터(02-566-55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hs.co.kr)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scs.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성

가. 대상 고객

- 개인 (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법인 등 불가)
※ 신용거래대주거래의 경우 관련 교육 이수 및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

나. 신용거래 대상 종목

신용거래용자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및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는 제외)
신용거래대주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회사에서 정하는 종목

※ 당사 신용거래 대상 종목은 영업점 문의 또는 HTS에서 확인 가능

다. 신용거래 보증금율

- ☑ 신용거래 용자 : 45 % (현금 25% + 대용 20%)
50 % (현금 25% + 대용 25%)
- ☑ 신용거래 대주 : 100 % (대용 100%)

라. 용자한도

구 분	한 도
신용거래 용자	최대한도 10억원
신용거래 대주	* 신규투자자 : 3천만원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 거래횟수 5회 이상 및 누적가입규모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 한도 7천만원인 고객이 첫 거래 이후 2년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 10억원

마. 담보유지비용

- ☑ 종목별 담보유지비용

구분	전 종목
일반매매계좌 (신용거래용자·대주 통시거래 가능)	170%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105%

바. 용자·대주 기간

- ☑ 신용거래 용자 : 90 일 (만기 연장 가능, 60일 연장가능, 횡수 [1]회로 제한)
- ☑ 신용거래 대주 : 60 일 (만기 연장 불가)
-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담보유지비용 하회 시 추가담보 제공 기간

구분	담보유지비용	추가담보 제공 기간
일반매매계좌 (신용거래용자·대주 통시거래 가능)	170% 미만	추가담보제공요구일 당일(D+1일 반대매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105% 미만	추가담보제공요구일 당일(D+1일 반대매매)

아. 이자를 및 정수일 등

- ☑ 이자를 적용기준

	구분	1~7일 이내	8~15일 이내	16~30일 이내	31~90일 이내	91~150일 이내
신용 용자	이자율	연 5.4%	연 6.8%	연 7.2%	연 7.8%	연 8.4%
	연체이자율	연체 당시 약정이자율 +3%				
신용 대주	이자율	연 6.0%				
	연체이자율	연체 당시 약정이자율 +3%				

- ☑ 이자 정수일 : ☑ 신용용자 : 매월 첫 영업일 ☑ 신용대주 : 매월 첫 영업일
- ☑ 이자 적용방식 : ☑ 신용용자 : 체자법 ☑ 신용대주 : 단일법

※ 적용방식(체자법, 단일법)에 대해서는 부록(용어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주매각대금 이율료

- ☑ 회사는 신용거래대주거래의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요율 : 0.1%
-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 매수상환시 결제일, 현물상환시 상환일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 신용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단, 반대매매 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창구거래 기준의 수수료율인 (0.3991639%~0.4491639%) 적용됩니다.
- ☑ 이자 외 발생비용은 담보주식 매매에 따른 매매수수료와 제세금으로 유화증권의 매매수수료 정책 을 적용합니다.
- ☑ 인지세 : 인지세는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3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신용거래용자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 (매도상환) 신용용자 매수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
 - (현금상환) 용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 ☑ 신용거래대주 :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 (매수상환)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 ☑ 상환매체 : 영업점 및 온라인(HTS)상으로 주문·신청 가능
- ☑ 상환처리일 :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 현금에 의한 상환은 상환 신청(오후 4시까지)한 당일 상환됨
- ☑ 상환방법 : 수량기준 상환 또는 금액기준 상환 가능

- (수량기준) 상환하고자 하는 수량이 기존 용자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용자금까지만 상환
- (금액기준) 상환하고자 '신청하는 금액' 만큼 상환하는 방법

※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 (담보의 징구) 회사는 **신용거래용자 시** 매수한 주권(증권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 시**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일반매매계좌의 담보증권 평가) **당일 증가**(당일 증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 당일 증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의 담보증권 평가) **당일 증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담보증권 종류별 할인율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당일 증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고객계좌 예탁 현금** → ②**담보증권** → ③**그 밖의 고객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신용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 ✓ **담보유지비를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 ✓ **이자, 매매수수료,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 ※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 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 반대매매 수량 =

담보평가금액 − (신용용자금액 × 담보유지비율)

전일증가 − (반대매매 기준가격 × 담보유지비율)

- (통지방법) 추가담보 납입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 (채무 충당 순서) 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 ②**연체이자** → ③**이자** → ④**채무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채무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구성되며 **연 [연체 당시 약정이자율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용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 **「용자금/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만기일의 **익약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용자금(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 미납금 발생 후 3개월간 미변제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용자 · 대주 기간 및 연장사항

☒ **신용거래용자** : 90 일 (60일 연장 1회 가능) ☒ **신용거래대주** : 60 일 (연장불가)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거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연장시점에 **최소담보유지비를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의 신용거래 가능 종목인 경우**에만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영업점 내방)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신용거래대주**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7 신용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도 하락시 신용거래, 증권담보용자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주식의 상한가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60%인 경우 6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50%(=1,000÷400×100)임

→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600만원)을 상회하게 됨

<사례2> 주식의 상한가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인 경우 현금 1천만원을 담보로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어받은 경우

→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천만원)을 상회하게 됨

-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최소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합니다.

-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을 하회할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

- (호가가격제한)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에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할 수 있습니다.
- (유통대주 이용 시 제한사항)
 - 신용거래대주는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 보유정보를 집중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10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i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용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응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사실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아래 주요내용을 **자발**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2

신용거래용자금 또는 대주증권 미상환시,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추가 금액 미납 시 등의 경우 **반대매매**가 일어나며, **단기간에 주식가치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3

연체 시 **연체이자**가 발생되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신규-만기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4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을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인)

→ 본인은 유화증권 주식회사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명/인)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원인)이 있을 경우 **유화증권 상담센터**(02-566-55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hs.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신용거래 보증금	■ 신용거래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용자 또는 대주를 받을 때 납부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뜻함. 급격한 시세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담보로 취득한 용자담보주식이나 대주매각대금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해당고객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담보유지비율	■ 신용거래시 용자로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당해 신용거래 용자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대용증권	■ 매매주문 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및 기타 보증금을 거래소에 납입할 때 거래소가 정한 비율 이내에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반대매매	■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상환기한 이전에 용자분은 매도, 대주분은 매수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청산하는 행위																		
소급법	■ 신용거래용자 이자를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예시> <table><tr><td>~7일까지</td><td>7%</td><td>~30일까지</td><td>8%</td><td>~90일까지</td><td>10%</td></tr><tr><td>이자기산월 (9.4)</td><td>7월 경과 (9.11)</td><td>30일 경과 (10.3)</td><td>50일 경과 (10.24)</td><td></td><td></td></tr><tr><td colspan="5"> 최종이자율인 10% 적용 </td><td>총 이자 = 684,932원</td></tr></table>	~7일까지	7%	~30일까지	8%	~90일까지	10%	이자기산월 (9.4)	7월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최종이자율인 10% 적용					총 이자 = 684,932원
~7일까지	7%	~30일까지	8%	~90일까지	10%														
이자기산월 (9.4)	7월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최종이자율인 10% 적용					총 이자 = 684,932원														
체차법	■ 신용거래용자 이자를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예시> <table><tr><td>이자기산월 (9.4)</td><td>7월 경과 (9.11)</td><td>30일 경과 (10.3)</td><td>50일 경과 (10.24)</td><td></td><td></td></tr><tr><td colspan="5"> 7% 8% 10% </td><td>총 이자 = 593,151원</td></tr></table>	이자기산월 (9.4)	7월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7% 8% 10%					총 이자 = 593,151원						
이자기산월 (9.4)	7월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7% 8% 10%					총 이자 = 593,151원														
단일법	■ 신용거래용자 이자를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예시> <table><tr><td>이자기산월 (9.4)</td><td>7월 경과 (9.11)</td><td>30일 경과 (10.3)</td><td>50일 경과 (10.24)</td><td></td><td></td></tr><tr><td colspan="5"> 단일 이자율인 7% 적용 </td><td>총 이자 = 479,452원</td></tr></table>	이자기산월 (9.4)	7월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단일 이자율인 7% 적용					총 이자 = 479,452원						
이자기산월 (9.4)	7월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단일 이자율인 7% 적용					총 이자 = 479,452원														
공매도	■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유통대주	■ 증권회사가 매도주식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여하여 고객에게 재대여한 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 매도자는 매도대금 및 신용거래 보증금을 신용대주의 담보로 예탁시켜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당해 주식을 상환해야 함																		

※ 소급법, 체차법, 단일법에 대한 각각 예시의 총이자 **신용거래대금 5천만원, 대출기간 5일(9.4~10.24)**을 가정하여 산출함